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70 호 |
|----------|------|

제출년월일 : 1998.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트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 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법인격 및 명칭을 정함 (안 2조)
 - 법인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치
 - 명 칭 : 재단법인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
-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5조)
- 조합에서 수행할 사업을 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함(안 7조)
- 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건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안 8조)
- 재산으로 출연된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금전차극에 대한 보증 및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고 타용도 사용시 회수토록 규정함 (안 9조)

-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 보증계약을 체결 체결토록 함 (안 10조)
- 매 사업 연도에 발생하는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잔여 액은 기본재산 확충에 사용토록 함 (안 11조)
- 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평가 및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13조, 14조)
- 조합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하도록 함 (안15조)

관계법규

- 민법 (제32조, 제45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은행법 (제2조, 제 7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제9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3조의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4조)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조 례 안 : 따로붙임

관계법규 발췌문 : 따로붙임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및 명칭) 조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재산”이라 함은 조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 출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채무를 조합이 보증함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의 채무”라 함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다음각목의 채무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

나. 중소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기타 중소기업의 금전채무 중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금전채무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
-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제4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재산)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조합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출연) 도지사는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의 사용) ①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출연금은 다음 각 호 이 의는 사용할 수 없다.

1. 조합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본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

② 조합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도지사는 타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보증 계약) 조합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신용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익금의 처리)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한다.

제12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3조(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합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련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감사 등) 도지사는 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귀속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